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 가 교 육 위 원 회 설 치 및 운 영 에
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국가교육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·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”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로 명시하고 있음.

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국민 동의 요건을 충족한 사례가 없는 등 본 제도가 활성화되어있지 않은 바, 교육 정책 형성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의견 수렴·조정 요청을 위한 동의 요건을 현행 10만 명 이상에서 5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10만”을 “5만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·조정 절차) ① (생 략)	제13조(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·조정 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”란 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 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 람의 수가 <u>10만</u> 명 이상인 경우 를 말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5만</u> ----- 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가교육위원회 교육소통기획과	
연 락 처	(02) 2100 - 3384